

=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=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8. 31. - - - - - 사하구청장
 나. 회부일자 : 2006. 9. 1
 다. 상정일자 : 제1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(06.9.12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임석진 세무과장)**가. 제안이유**

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의 세분화 및 그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전국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규정함(안 제2조)
 -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
 -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
 -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
-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를 정함(안 제3조)
 - 지급기준 : 1년차 1/100, 2년차 3/100, 3년차 5/100
 - 지급한도 : 징수1건당 30만원, 개인별 월 100만원
-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, 부당지급 받은 경우 환수 규정 신설(안 제4조 · 제5조)

3.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세법」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
-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
-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등
-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당 지급 되었을 경우에는 환수한다는 사항이 중요한 내용이며

○ 참고로 포상금의 지급은

-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
-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
-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
- 납세의무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와
도로·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
100분의 5로 조정하였으며 그 한도액은 1건당 30만원으로 하되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
할 수 없도록 하고
-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의
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로 정하고 한도액을 1건당 100만원을 초과
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그러나 동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의 “100만원”이라고 만 표시 되어 있어 이를
“1건당 100만원”으로 수정하고 다른 항목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옳을 것으로
사료됩니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수정의결

붙임 : 수정안 대비표

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<p>제3조(지급 기준 및 한도) ① 생 략 1 ~ 6. 생 략 ② 생 략 1. 생 략 2. 제1항 제6호 : <u>100만원</u></p>	<p>제3조(지급 기준 및 한도) ① 생 략 1 ~ 6. 생 략 ② 생 략 1. 생 략 2. 제1항 제6호 : <u>1건당 100만원</u></p>